



# 백양골 소식

2018년  
3월

■ 제 477호 ■

발행인: 장성군수 / 편집인: 총무과장 / 제작: 총무과 / ☎ 390-7231 / FAX 390-7579 / [jangseong.go.kr](http://jangseong.go.kr) / 2018.3.22.(목)

2018 Spring of Vincent, in Jangseong

## 장성 빈센트의 봄

4. 7.<sup>토</sup> ~ 8.<sup>일</sup> 장성역 광장 ~ 장성공원





# 장성군

## [일반행정 소식] ————— 3

1.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해요!
2. 2018년도 저울 정기검사 실시
3. 도로명 상세주소 신청 안내
4. 관리하기 불편한 인감도장 대신 편리하고 안전한 「본인서명」하세요
5. 자동차세 3월 연납으로 절세하세요!
6. 마을세무사 제도 운영
7. 2018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안내
8. 2018년 개별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9. 지방세·세외수입 특별 징수 기간 운영
10. 상수도 요금 감면 신청하세요.

## [보건·복지 소식] ————— 13

1. 취약계층을 위한 법률서비스 “법률 홈닥터”
2. 장성군 드림스타트 2018년도 신규대상아동 모집
3. 올바른 기침예절! 결핵예방!
4.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을 예방하려면?
5. 한방 난임치료 및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지원사업
6. 치매조기검진사업 전수조사 실시

## [농축산 소식] ————— 19

1. 산림인접지 논밭두렁, 쓰레기 태우기 안됩니다
2. 불법전용산지 지목현실화 신고
3. 농촌인력지원센터 안내
4.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신청 안내
5.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철저
6. 농기계임대료, 이제 신용카드로 결제 OK !

## [국도정 소식] ————— 25

1. 공익신고제도
2. 성별영향평가제도 안내
3. 식품,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해요!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업체 부담경감과 고용위축 방지 및 최저임금 연착륙 지원

\* 7.15. 최저임금위원회 : 시급 ('17년) 6,470원 → ('18년) 7,530원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게, 월 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 지원

□ **사업기간 : 2018. 1. ~ 2018. 12.**

###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고용주는 30인 이상도 지원

○ 지원요건 : ①월 보수 \*190만원(과세기준) 미만 노동자 고용

\*연장근로수당(20만원 한도) 포함시 '월 210만원'

②1개월 이상 고용

③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원칙)

○ 고용보험 적용제외자\*도 지원

\*합법적인 외국인 근로자, 5인 미만 농림·어업 종사자 등

○ 지원제외

-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5억 초과, 개인은 "사업소득", 법인은 "당기순이익" 기준)

-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 받고 있는 사업주 등

○ 지원금액 :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 이내 사업주에 지원

○ 신청·접수 : 온라인 및 오프라인(읍면 행정복지센터, 4대 사회보험공단 등)

문의처 ☎ 390-7468 (고용투자정책과 일자리창출담당)

## 2018년도 저울 정기검사 실시

### □ 사업개요

- 검사대상 :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는 10톤 미만의 저울
- 검사주기 : 2년에 한 번씩 실시
- 검사공고 : 2018. 4. 16. ~ 4. 30.(15일간)
- 정기검사 : 2018. 5월중 실시(읍면별 지정장소 및 일자 공지 예정)
- 정기검사 면제
  - 정기검사 해당 연도 또는 전년도에 검정 또는 재검정을 받지 못한 저울 판매 등을 위하여 보관, 진열 중인 저울
  - 국가교정기관에서 정기검사 해당 연도 또는 전년도에 교정을 받고 그 결과 사용오차 이내에 있는 저울
- 소재장소 정기검사 대상
  - 저울이 토지 또는 건물 등 공작물에 부착되어 있는 경우
  - 저울을 이동할 경우 파손되거나 정확도가 저하 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수의 저울을 소재 장소에서 검사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

### □ 참고사항

-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저울을 사용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처 ☎ 390-7353 (경제교통과 경제정책담당)

## 도로명 상세주소 신청 안내

### □ 상세주소란 ?

○ 도로명주소의 번호 다음에 표기하는 동, 층, 호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101동 101호

---

행정구역
도로명+건물번호
상세주소

○ 다가구주택 등의 임차인이 개별주소 사용을 통한 생활 편의 도모

상세주소 부여 전(前)



전남 장성군 장성읍 비봉5길 22



상세주소 부여 후(後)



전남 장성군 장성읍 비봉5길 22, 301호  
 전남 장성군 장성읍 비봉5길 22, 201호  
 전남 장성군 장성읍 비봉5길 22, 101호

□ 신청대상 : 다가구주택, 원룸, 공장, 상가건물 등 소유자 및 임차인

□ 신청장소 : 장성군청 민원봉사과

문의처 ☎ 390-7261 (민원봉사과 지적담당)

## 관리하기 불편한 인감도장 대신 편리하고 안전한 「본인서명」 하세요

###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 □ 서명은 발급받을 때마다 등록해야 하나요?

사전신고 필요 없이 발급할 때마다 본인이 서명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인감도장을 제작·신고·관리하는 불편이 없어졌습니다.

### □ 전국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시·군·구청 민원실 및 읍·면·동에서 신분증을 제출하고,  
본인 확인 후 서명만 하면 발급 가능합니다.

### □ 전자본인서명확인서도 발급 가능한가요?

2013. 8. 3.부터 시행되어 인터넷 민원24 ([www.minwon.go.kr](http://www.minwon.go.kr))에서  
편리하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390-7243 (민원봉사과 민원행정담당)

## 자동차세 3월 연납으로 절세하세요!

### □ 자동차세 연납제도

-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2차례 납부해야 하나 일시 납부 시 세액의 일정액을 감면 받을 수 있는 제도.
- 3월 연납 감면율 : 연세액의 7.5%

구 분	감 면 율	구 분	감 면 율
1월 연납	연세액의 10%	3월 연납	연세액의 7.5%
6월 연납	연세액의 5%	9월 연납	연세액의 2.5%

### □ 3월 연납 신청 및 납부기간 : 2018. 3. 1. ~ 3. 31.

### □ 신청장소 : 군청(재무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 □ 신청방법

- 전화 또는 방문신청
- 인터넷 신청 : 위택스([www.wetax.go.kr](http://www.wetax.go.kr)) → 자동차세 연납 신청

### □ 기타 안내사항

- 연납 후 소유권 이전 및 폐차, 말소 시 잔여기간 세액 일할계산 환급 처리
- 연납 후 주소 이전 시 당해 연도 자동차세 부과하지 않음.
- 연납 후 가족이나 지인에게 차량 이전 시 연납승계신청서 제출하면 양도받은 자에게 당해 연도 자동차세 부과되지 않음.

문의처 ☎ 390-7291 (재무과 부과담당)

## 마을세무사 제도 운영

- 세금고민 해결사, 마을세무사를 아십니까? -

### □ 마을세무사란?

- 주민들의 세금고민 해결을 위해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재능기부)를 제공하기로 약속한 우리 이웃 세무사

### □ 상담사항

- 보유재산이 5억원 미만인 분들은 국세와 지방세 관련 세금고민과 지방세 불복청구(청구액 3백만원 미만)에 대해 무료상담 가능

### □ 현황

- 전남 79명의 마을세무사가 활동(장성군 마을세무사 5명)

**생활속세금고민, 마을세무사와 무료로 상담하세요.**

마을세무사란? 주민들의 세금고민 해결을 위해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재능기부)를 제공하기로 약속한 우리 이웃 세무사입니다.

마을세무사를 통한 세금고민 해결법 4단계

- 1 세금고민 발생**
  - 이용대상 : 휴약계중,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
- 2 우리 동네 마을세무사 검색**

〈마을세무사 연락처를 검색하는 다양한 방법〉

  - 인타넷 검색창에 "마을세무사" 검색  
→ 행정부 마을세무사 안내페이지에서 확인
  - 자치단체 민원실,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홍보자료, 자치단체 전화 문의 등을 통한 확인
  - "정부3.0 서비스 알리미" 앱을 통해서도 검색 가능 (세금·법률 분야)
- 3 마을세무사와 전화 상담**
  -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금고민 상담, 지방세 불복 청구 관련 상담도 가능
  - \* 어려운 주민을 우선 상담하기 위해 상담요청 이상 우선순위는 선의의 제재할 수 있음
  - 이메일, 텍스트를 통한 상담도 가능
- 4 세금고민 해결**
  -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마을세무사와 시간·장소를 정하여 대면 상담

행정자치부 한국세무사회

### □ 우리군 마을세무사

- 유상현 세무사 : 062-511-0017
- 정장영 세무사 : 062-228-9007
- 백선거 세무사 : 062-376-5334
- 김영신 세무사 : 062-369-6001
- 김화석 세무사 : 062-232-4352

납세고지서를 받고  
세금고민을 하고 계셨다면,  
세금고민 해결사!  
마을세무사 제도를  
적극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390-7291 (재무과 부과담당)



## 2018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안내

### □ 법인지방소득세 개요?

- 과세대상 : 법인소득(각 사업연도 소득, 토지등 양도소득, 미환류소득 등)
- 납세의무자 :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	세 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 × 1%
2억원 초과 ~ 200억원 이하	200만원 + (2억원 초과 × 2%)
200억원 초과	3억 9,800만원 + (200억원 초과 × 2.2%)

###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 대상자 : 12월 결산 법인('17년 귀속 법인소득)
- 신고·납부기한 : '18. 4. 30.(월) 까지
- 납세지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의 소재지)
- 신고·납부방법 : 위택스 전자(파일)신고·납부 또는 지자체 방문신고·납부

### □ 신고·납부시 유의사항

- ▶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납부
  - 안분대상 법인임에도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가산세 부과
-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시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
  -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에만 제출해도 되나, 미제출의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부과
- ▶ 수정신고는 자치단체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가능

◇ 기타 자세한 신고안내는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co.kr](http://www.wetax.co.kr)) 공지사항을 참고하세요

문의처 ☎ 390-7386 (재무과 부과담당)

## 2018년 개별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 제출

### □ 개별주택가격

- 열람기간 : 2018. 3. 15. ~ 4. 3.
- 열람장소 : 군(재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장성군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jangseong.go.kr>)
- 열람내용 :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토지·건물 일체가격)
- 의견제출 : 2018. 3. 15. ~ 4. 3.
  - 제출사항 : 용도지역 및 주건물구조 등 주택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 가격 제시
  - 제출자 :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 제출처 : 군(재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 제출방법 :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 서식에 기재

### □ 공동주택가격

- 열람기간 : 2018. 3. 15 ~ 4. 3
- 열람장소 : 공동주택 소재지 읍·면 민원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http://www.realtyprice.kr))
- 열람내용 : 2018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안)
- 의견제출 : 2018. 3. 15. ~ 4. 3.
  - 제출사항 : 매도호가나 특수한 사정에 의해 형성된 가격 등이 배제된 적정가격에 비추어 공동주택가격(안)이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경우 또는 가격 형성 요인이 유사한 인근 공동주택 등과 가격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은 경우에 적정한 가격에 대한 의견을 제시
  - 제출자 : 공시대상 공동주택의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제출방법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http://www.realtyprice.kr)),  
공동주택 소재 읍·면 민원실, 국토교통부(한국감정원 지사)

문의처 ☎ 390-7386 (재무과 부과담당)

## 지방세·세외수입 특별 징수 기간 운영

□ 기 간 : 2018. 3. 1. ~ 9. 30 [7개월간]

□ 납부 해야 할 지방세 및 세외수입

- 지방세 :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록면허세 등
- 세외수입 :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손해배상보상범위반과태료, 장애인주차구역위반과태료 등

[ 납부할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확인 방법]

- 고지서, 인터넷(위택스 및 지로), 금융기관 CD/ATM 등
- 전화 문의 : 군청(재무과), 읍면행정복지센터

□ 납부방법

- 금융기관 창구, 위택스, 인터넷 지로, 금융기관 CD/ATM
- 신용카드 납부 : 전국 은행 CD/ATM 납부 가능  
(지방세 조회 후 납부 : 타사 카드 기기이용료 900원 부담)
- ※ 군청(재무과) 방문 신용카드 결제 가능

□ 지방세 · 세외수입 체납 시 불이익(지방세징수법 제7조 ~ 제11조)

- 관허사업, 인허가 등 제한 및 기존 사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
- 신용정보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가 제공됨
- 관공서 등에서 각종 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
- 각종 보조사업 ·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에서 배제
- 부동산, 차량, 예금 등 재산 압류 및 공매 매각 될 수 있음
- 지방세 체납차량은 번호판 영치될 수 있음  
- 번호판 영치의 날 : 매주 수요일 야간

문의처 ☎ 390-7287,7285 (재무과 징수담당)

## 상수도 요금 감면 신청하세요

### □ 근 거

- 장성군 수도급수 및 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35조

### □ 감면대상 및 감면율

감 면 대 상	감 면 율
모범업소, 국가유공자, 경로당, 학교, 유치원	30%
자동이체	1%
지하 급수관의 누수	누수 전 정상부과 된 3개월 평균사용량을 초과한 양의 50%

#### ※ 누수감면 대상 (예시)

- 배관의 노후화 또는 한파로 인하여 땅속에 묻힌 관이 파손되어 누수 발생 후 땅을 파서 공사를 완료한 경우

###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및 팩스[061-390-7670]

### □ 구비서류

- 상수도요금 감면 신청서 1부.
  - 관련 증빙자료 첨부 : 모범업소 지정 서류, 국가유공자증 등
  - 누수감면 신청 시 : 공사 전·중·후 사진, 영수증(위탁 수리의 경우)
- 자동이체 신청서 1부.

### □ 접 수 처 : 맑은물관리사업소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문의처 ☎ 390-8562 (맑은물관리사업소 관리담당)

## 취약계층을 위한 법률서비스 “법률 홈닥터”

### □ 법률홈닥터

- 법률복지서비스 제공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 소속 변호사

### □ 법률홈닥터 제도는?

- 지자체·사회복지협의회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법률주치의” 제도
  - 2018년 현재 전국 60곳 시청·구청·사회복지협의회에 배치

### □ 대상과 분야

- 기초수급자·다문화가족·범죄피해자 등 법률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
- 채권·채무, 근로관계·임금, 상속·유언, 이혼·친권·양육권, 개인회생·파산 등 생활법률 전반에 관한 지원

### □ 신청방법

- 법률홈닥터 홈페이지([lawhomedoctor.moj.go.kr](http://lawhomedoctor.moj.go.kr))
- 전남사회복지협의회(☎ 061-285-1161)

### □ 지원 내용

- 법률상담과 소송절차 안내
- 법률구조 및 사회복지기관과 연계
- 법문화 출장 교육 등

문의처 ☎ 390-7313 (주민복지과 생활지원담당)

## 장성군 드림스타트 2018년도 신규대상아동 모집



하늘아래 모든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장성군드림스타트!!

귀 닥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장성군 드림스타트가 신규대상 아동을 모집합니다!

귀 가정 또는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 아동을 발견시에는  
드림스타트 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드림스타트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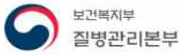
아동의 공평한 양육여건과 출발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저소득층 0세(임산부)~만12세 아동과 그 가족에게 사례관리를 통한 보건, 보육·복지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복지사업입니다.

#### □ 장성군 드림스타트 현황

- 위 치 : 장성읍 가정복지회관 1층
- 시 설 : 사무실, 도서실, 상담실, 프로그램실 등
- 서비스대상 : 0세(임산부) ~ 만 12세 아동 및 가족
- 서비스 내용
  - 기본서비스 : 가정방문을 통한 주기적 면담 및 현황조사
  - 필수서비스 : 건강검진, 예방접종, 영양교육, 응급처치교육, 아동권리교육, 부모교육
  - 맞춤형서비스 : 건강관리, 학습지원, 문화체험, 가족지원 등
- 신청방법 : 직접방문/ 전화상담/ 가정방문상담

문의처 ☎ 392-2323, 390-7791, 7792, 7633(주민복지과 여성친화담당)

# 올바른 기침예절! 결핵예방!



결핵,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과 모두를 배려하는 첫 걸음

## 올바른 기침예절을 지켜주세요!



기침, 재채기를 할 때 손으로 가리지 않기



휴지나 손수건이 없을 때는  
옷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기



휴지나 손수건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고,  
사용한 휴지는 휴지통에 버리기



기침 후에는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 씻기



## 인플루엔자를 예방합시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받기



올바른 손씻기의 생활화



기침예절 실천



자기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문의처 ☎ 390-8334 (보건소 감염병대응담당)

##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을 예방하려면?

일  
반  
인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자주 씻습니다.  
\* 특히, 화장실 사용 후, 기저귀 교체 후, 식품 섭취 또는 조리 전
2.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습니다(특히, 굴, 조개류 등).
3. 물은 끓여 마십니다.

<b>01</b>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습니다. 	<b>02</b>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습니다. 	<b>03</b> 물은 끓여 마십니다. 
---	---	--

환  
자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자주 씻습니다.
2. 환자가 어린이집, 학교 학생일 경우 적어도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없어진 후 2일까지 공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3. 식품을 다루거나 조리를 하지 않습니다.  
\* 식품취급자, 간호직 종사자는 적어도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없어진 후 3일까지 식품취급, 간호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b>01</b>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습니다. 	<b>02</b>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생활하지 않습니다. 	<b>03</b> 설사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조리를 하지 않습니다. 
---	---	---

환  
자  
의  
가  
족  
및

1. 환자가 사용한 화장실을 소독하십시오.  
\* 염소 1,000~5,000ppm을 묻힌 중이타일 등으로 닦고 10분 후에 물(깨끗한 물걸레)로 닦아주세요.
2. 환자가 만졌거나 구토물에 오염된 식품은 폐기하고, 문고리나 물품은 소독하십시오.  
\* 환자가 접촉한 문고리나 물품은 염소 1,000~5,000ppm을 뿌린 후 10분 후에 물로 씻어주세요.
3. 식기는 온수와 세제로 씻고 빨래는 세제를 사용하여 세탁기로 세탁하십시오.  
\* 구토물, 분변으로 더러워진 옷, 침구는 염소 5,000ppm에 30분 이상 담근 후 세탁해 주세요.
4. 환자가 발생한 가정은 다른 사람들이 방문을 자제하도록 하고 완쾌한 후 청소와 소독 후 3일 후에 방문하도록 하십시오.
5. 환자는 다른 가족과 떨어져 다른 방에서 혼자 지내게 하는 것을 권장하며 손 닦는 수건은 각자 따로 사용하십시오.

<b>01</b> 올바른 손씻기 생활화  30초 이상 손씻기를 해주세요.	<b>02</b> 철저한 환경소독  구토물, 분변 등은 염소1,000~ 5,000ppm을 이용하여 청소 및 소독하여 주세요. * 청소 및 소독 후 쓰레기봉투에 모두 버립니다.	<b>03</b> 오염된 옷과 침구류 세탁하기  구토물, 분변으로 더러워진 옷, 침구는 염소1,000ppm에 30분 이상 담근 후 세탁해 주세요.	<b>04</b> 보호장비입기  환자를 간호하거나, 청소 및 소독을 하는 경우에, 앞치마, 고무장갑을 반드시 착용해 주세요.
---	---	---	--

문의처 ☎ 390-8333 (보건소 감염병대응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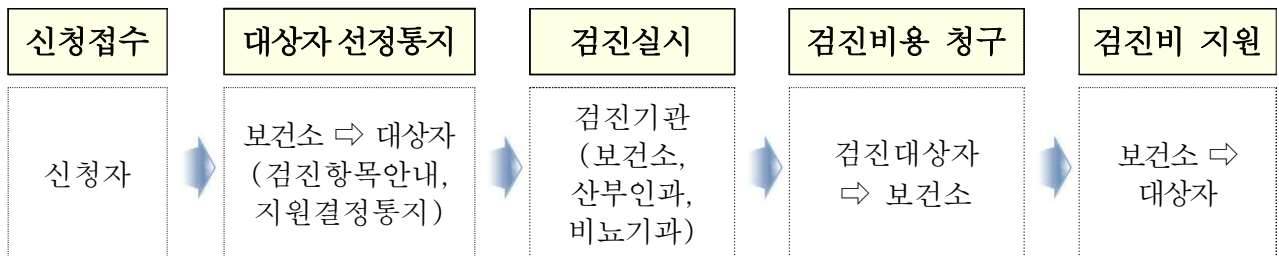
## 한방 난임치료 및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지원사업

### □ 한방 난임치료 사업 안내

- 기 간 : 2018. 3월 ~ 12월(치료 4개월, 추적검사 6개월)
- 내 용 : 한약(4개월분) 및 침구 등 치료, 추적검사
  - ※ 치료 종결 후 3개월은 양방 난임 시술 금지(이후 희망자 양방 시술 가능)
- 대상자 선정기준
  - 정상적인 부부생활에도 불구하고 1년 이상 정상적인 임신이 되지 않은 만 44세 이하 여성(기준중위소득 200% 이하자)
  - 한방 난임치료 중 보조생식술을 받지 않기로 동의한 자 등
- 탈락기준
  - 특별한 이유없이 2주 이상 한의원을 내원하지 않거나 한약복용을 거부하는 경우 등
  - ※ 정당한 사유없이 임의로 치료를 중단할 시 개인 부담이 발생할 수도 있음

### □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지원사업 안내

- 기 간 : 2018. 3월 ~ 12월
- 사업대상 : 장성에 거주하고 있는 중위소득 200%이하의 신혼(예비)부부
- 지원내용 : 초음파, 항체, 소변, 성병, 흉부x-ray 등
- 지원금 : 여성 17만원, 남성 9만원 이내(임신 관련 건강검진비 중 본인부담금)
- 검진기관 : 보건소, 산부인과, 비뇨기과 등(전라남도 내 소재)
- 지원절차



문의처 ☎ 390-8361 (보건소 건강생활담당)

## 치매조기검진사업 전수조사 실시

### □ 치매조기검진사업 전수조사 실시

- 사업기간 : 2018. 1월 ~ 12월
- 대 상 : 만60세 이상 관내주민
- 검진장소 : 보건지소, 진료소, 기관·단체, 전 등록 경로당 등
- 조사내용
  - 치매선별검사, 치매상담 및 교육, 치매예방수칙 333, 노인우울증 검사 등
- 검사방법
  - 1차 : 서면검사(치매선별검사)
  - 2차 : 인지저하자 ⇒ 진단 및 감별검사 시행

### □ 치매진단, 감별검사 및 치매치료관리비 등 지원

- 치매진단 및 감별검사 지원
  - 대 상 : 치매조기검진사업 대상자 선별검사 후 인지저하자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인자
  - 검진협약병원 : 장성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장성병원
  - 내 용 : 신경인지검사, 우울검사, 의사진료, 혈액, 소변검사, CT검사
  - 지 원 액 : 진단검사(8만원), 감별검사(8만원)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대 상 : 치매환자 등록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인자
  - 지 원 : 월 3만원까지(연36만원) 본인 실비지원(진료비+약제비)
  - 신청서류 : 치매치료비지원 신청서, 약처방전, 소견서 및 진단서, 건강보험증, 본인통장
- 조호물품 지원
  - 대 상 : 관내 등록된 치매환자 / 지 원 : 영양제, 기저귀, 물티슈 등

문의처 ☎ 390-8374(보건소 진료재활담당)

## 산림인접지 논·밭두렁, 쓰레기 태우기 안됩니다!

### □ 봄철 산불조심기간 : 2018. 1. 25. ~ 5. 15.

- 봄철 건조기에는 아주 조그마한 불씨로도 산불로 쉽게 번지게 됩니다.  
군민 모두 힘을 모아 산불예방에 적극 동참합시다.
- 산불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119 또는 군청 산림편백과(061-390-7425),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에 신속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논·밭두렁 태우기, 여러분의 생명도 위협합니다.

- 지난 10년간 논·밭두렁을 태우다 산불로 번져 54명 사상  
당황한 노인들이 혼자서 불을 끄려다 연기에 질식
- ※ 사망(39명)의 대부분은 70대 이상 고령자
- ※ 산불로 확산될 시 즉시 신고하고 절대 혼자 진화하면 안됨

### □ 산불예방을 위한 실천방안

- 산림 내 또는 산림과 가까운 지역(100m 이내) 소각행위 금지
  - 불에 타기 쉬운 물질은 낮이나 예초기를 이용하여 제거
  - 영농부산물은 일정장소에 모아두었다가 퇴비로 활용
- 산불위험이 없는 지역에서 농사를 위한 소각은 행정기관의 지원을 받아 마을 공동으로 실시
  - 소각은 바람이 없고 습도가 높은 날 실시
  - 비닐이나 농사쓰레기는 태우지 말고 수거하여 처리
- ※ 실수로 산불을 내어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문의처 ☎ 390-7425 (산림편백과 산림보호담당)

## 불법전용산지 지목현실화 신고

□ **신고기간** : 2017. 6. 3. ~ 2018. 6. 2.까지 신청

### □ 대 상

-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3 ~ 7년 이상 계속하여 전(田), 답(畓), 과수원으로 이용·관리하고 있는 산지. 단, 임산물소득지원 대상품목은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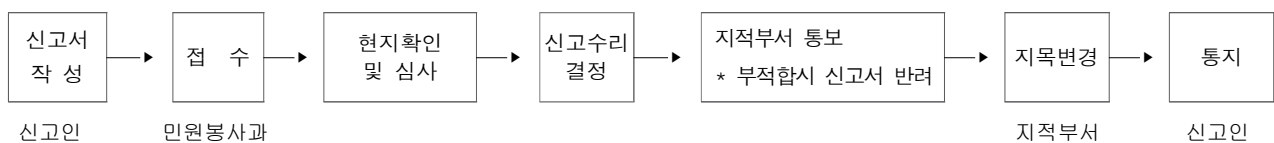
### □ 지목현실화 조건

- 산지관리법에 따라 시설물의 철거명령 또는 형질변경된 산지의 복구명령을 받아 복구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아니한 산지
- 산지의 행위제한의 행위가능 시설 및 산지전용허가·신고 기준에 적합할 것
- 신고하는 산지가 자기 소유의 산지일 것
- 농지원부 등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자가 사용하고 있을 것

### □ 구비서류

- 분할측량성과도 또는 등록전환측량성과도 1부.
- 산지이용확인서 1부(신고대상 산지의 소재지 리·동에 5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 중 통·반·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이 확인)
- 토지이동신청서 1부.
- 농지원부 등본 등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자가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
- 자격증 소지자가 조사·작성한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 1부.

### □ 처리절차



문의처 ☎ 390-7247~9 (민원봉사과 개발민원담당)

## 농촌인력지원센터 안내

### □ 농촌인력지원센터란?

- 일손이 필요한 농업인에게 인근 농촌의 초기 귀농자, 지역민 및 도시의 구직자를 중개수수료 없이 연계하여 주는 곳임
- ※ 인건비는 농가가 부담하고 농촌인력지원센터는 인력을 중개·알선

### □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농업인 : 농작업에 일손이 부족하여 일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하는 농업인
- 일자리 구직자 : 신체 건강하고 농작업이 가능하신 분
- ※ 외국인 근로자는 불가하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다문화 가정 등) 가능

### □ 언제·어디로·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간) 연중
- (신청방법) 첫회는 방문접수 필수, 2회부터는 전화신청 가능
  - 농업인 :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농촌인력지원센터에 신청
    - 필요인력, 일정, 임금수준, 작업내용 등을 신청서에 기입
  - 구직자 : 일하고 싶은 지역의 농촌인력지원센터에 신청
    - 희망작업기간, 희망임금, 차량필요 여부 등을 신청서에 기입
- (접수처) 군내 농촌인력지원센터 (2개소)
  - 장성농협 농촌인력지원센터(장성읍 청운2길 18) ☎ 394-5100
  - 삼서농협 농촌인력지원센터(삼서면 해삼로 1141) ☎ 399-1323

### □ 일자리 참여자에게 주는 혜택이 있나요?

- 상해보험 무상가입
- 교통비 지원
- 숙박비(관외자 등 지역에 하지 않는 작업자) 지원

문의처 ☎ 390-8456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담당)

##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신청 안내

### □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18. 1. 22. ~ 4. 20.까지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 행복복지센터
- 신청대상 : 2017년 벼 재배농지에 타작물 재배하거나,  
2017년 자발적 타작물 전환 농지
  
- 사업량 : 265ha
- 사업비 : 900,441천원(국비 80%, 도비 6%, 군비 14%)
- 지원품목 : 1년생 및 다년생 작물  
※ 단, 무, 배추, 고추, 대파 제외
  
- 지급단가(ha당) : 평균 340만원
  - 사료작물 : 400만원/ha
  - 일반작물 : 340만원/ha
  - 두 류 : 280만원/ha
- 지급한도 : 최소 0.1ha(300평) 이상이며, 상한선은 없음
- 지급시기 : 2018. 11 ~ 12월

문의처 ☎ 390-8458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담당)

##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철저

- 개물림 사고는 2015년 1,800여건, 2016년 2,111건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개물림 사고 언론보도 또한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에 따라, 우리군 관내에서도 마을 및 도로 내 배회하고 있는 개에 대한 민원 신고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가정집에서 기르는 개의 경우 보호자 없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케이지, 목줄, 울타리 등으로 안전조치하여야 하나,
- 자기가 기르는 개는 사람을 물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아무런 조치없이 방치하여 민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 기르는 개에 대해서는 집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 개와 산책시 반드시 목줄 착용 및 맹견(도사견 등)의 경우 목줄·입마개를 착용하여야 하며, 동 사항 위반시 동물보호법 및 관련법에 따라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 동물 사육·관리에 관한 규정

-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않아 나돌아 다니게 하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거나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됨  
(경범죄 처벌법 제 1조 제 32호·제5조제1항 및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별표)
- 외출시 목줄 등 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5만원에서 30만원 사이의 과태료
- 동물이 다리를 물어 상처를 내는 등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치료비 등 그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함(민법 제 750조 및 민법 제 759조 전단)
- 이 때 손해를 배상 책임자는 해당 동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소유자를 위해 사육·관리 또는 보호에 종사한 사람도 해당됨(민법 제 759조 제 2항). 끝.

문의처 ☎ 390-8518 (농업기술센터 가축방역담당)

# 농기계임대료, 이제 신용카드로 결제 OK !

-2018. 3. 26부터 3개권역 임대사업소 신용카드 결제 시행 -

## □ 운영목적

- 신용카드 이용 보편화와 민원인 편의 등을 고려하여 농기계임대료의 카드결제 시스템을 도입

## □ 시행시기 : 2018. 3. 26(월)

## □ 시행장소 : 3개소

- 농기계임대사업소 본 소(장성읍 단풍로 220) ☎ 390-8439
- 농기계임대사업소 서부분소(삼계면 영장로 1620-82) ☎ 390-7192
- 농기계임대사업소 북부분소(북이면 방장로 950-10) ☎ 390-7197

## □ 운영내용

- 농기계임대사업소 임대농기계 임대료 납부를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로 결제 가능
- ※ 삼성, 신한, 국민, 농협, BC, 현대, 롯데카드 사용 가능

## □ 기대효과

- 농기계 임대료 납부방식의 다양화로 농기계 임대농업인의 이용편의 증대 및 농기계 이용율 제고

### <봄철 인기 임대농기계 >



<동력제초기>



<보행관리기>



<농용굴삭기>



<휴대용전동가위>



<잔가지파쇄기>

문의처 ☎ 390-8437 (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담당)



# 공익신고제도

(국민의 안전 등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제도)

## 신고 주체

누구든지(내부 직원이나 관계자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 신고 대상

- 소방검사감리 위반, 소방시설 등록증 대여
- 방화시설·피난시설 미설치 또는 변경·훼손 등 부실 관리
- 다중이용시설에 방염 성능기준 미달 제품 사용
- 각종 공사 중 불량 자재·부재의 공급·사용
- 위험물 유출, 허가를 받지 않은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 설치  
 ⇨ 「소방시설법」, 「건축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279개 법률의 위반행위

## 신고 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수사기관
- 관할 행정·감독기관(행안부, 소방청, 국토부, 관할지자체 등)
- 공사 등 공공단체
- 기업의 대표자·사용자 등

## 신고 방법

인터넷창에 '청렴신문고' 입력

## 신고자 보호

- 비밀보장
- 불이익조치 금지
- 신변보호
- 책임감면

## 신고 보상금

- 보상 : 20억원 한도에서 벌금·과징금 등의 최대 20%(내부신고자에 한함)
- 포상 : 공익증진에 크게 기여한 경우 등 최대 2억원

## 문의처

- 국민권익위원회(www.acrc.go.kr) ⇒ 부패·공익신고 ⇒ 공익신고 상담
- 국번 없이 110 또는 1398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신고사건 처리 : 044-200-7752~7761
- 공익신고자 보호·보상 : 044-200-7772~7779

#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 ● 공익신고자와 협조자의 비밀을 보장합니다.

- 비밀보장 의무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주의·감독을 게을리한 사업주도 처벌

## ● 공익신고자와 협조자에 대한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

- 공익신고·협조를 이유로 신분상(해고 등)·인사상(징계 등)·경제적(계약해지 등) 불이익과 정신적·신체적 손상(집단 따돌림·폭행 등)을 받지 않습니다.
-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있거나 받은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공익신고자와 협조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감면이 가능합니다.

- 공익신고로 신고자·협조자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벌·징계·행정처분이 감경·면제될 수 있으며, 직무상 비밀준수 위반 및 손해배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고자·협조자와 그 친족·동거인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공익신고자에게 구조금을 지급합니다.

- 공익신고 등으로 치료, 이사, 쟁송, 임금손실 등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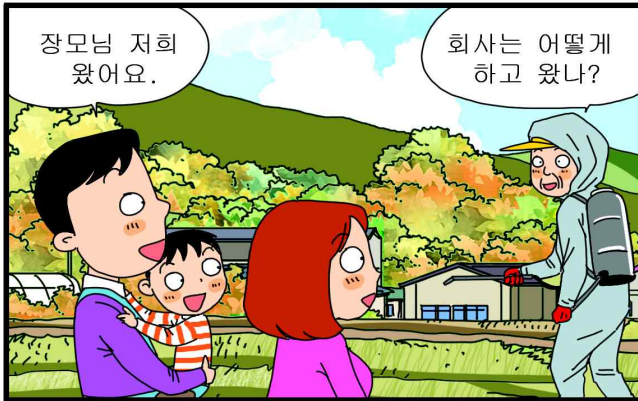
## ● 내부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공익신고로 국가 수입이 회복·증대된 경우 보상금을 지급합니다.(최대 20억원)



국민권익위원회

# 대한민국의 지속 발전을 뒷받침하는 성별영향평가제도 안내



제작: 문화체육관광부 여론과 ☎ 044-203-2922 / 자료제공: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 ☎ 02-2100-6172

# 식품,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